

#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6.

발 의 자 : 김위상 · 박정훈 · 김성원  
박충권 · 김은혜 · 우재준  
신성범 · 구자근 · 김승수  
이인선 · 김선교 · 김미애  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‘전액관리제’를 두고 있음.

택시 월급제의 토대가 되는 전액관리제는 기존 ‘사납금제’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,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실제로 월급제 도입 이후 지자체, 택시업계 등에서 실시한 여러 설문조사를 종합하면, 운수종사자의 10~20% 만이 월급제에 찬성하고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.

이에 현행 전액관리제 원칙은 유지하되, 단서 조항으로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의 납부 방식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납부 방식을 둘 수 있도록 하여,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근로

형태를 다양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1항 등).

##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대표(「근로기준법」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합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대표가 운송사업자와 합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<단서 신설>

1.·2. (생략)

③ (생략)

-----  
-----.

다만,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대표가 운송사업자와 합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